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

일본, 맥주 또는 발포주에 혼합할 수 있는 물질로 인산과 젖산 지정



SPS

이슈 바로가기 ▶

- 일본 국세청은 맥주 및 발포주에 산도 조절 목적으로 혼합할 수 있는 성분으로서 인산(phosphoric acid) 및 젖산(lactic acid)을 지정하기 위한 고시「주류 보존을 위해 물질을 혼합할 수 있는 주류의 품목 등을 정하는 건」 및 법령 해석 통달「주류 보존을 위해 주류에 혼합할 수 있는 물질의 취급」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2024년 1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함

주요 내용(고시 주요 내용)

- 대상 품목: 맥주 및 발포주(대상 품목 이외의 주류는 제외)
- 「주류 보존을 위해 물질을 혼합할 수 있는 주류의 품목 등을 정하는 건」의 개정 내용

대상 품목	첨가할 수 있는 성분	
	개정 전	개정 후
맥주 및 발포주	목재 칩, L-아스코르브산, L-아스코르브산나트륨, 피로아황산칼륨 또는 아황산수소칼륨액	목재 칩, L-아스코르브산, L-아스코르브산나트륨, 피로아황산칼륨, 아황산수소칼륨액, 인산 또는 젖산

- 「주류 보존을 위해 주류에 혼합할 수 있는 물질의 취급」별표 1 개정 내용

사용 목적	개정 전	개정 후
산도 조절	탄산칼슘, 탄산칼륨, 탄산수소나트륨, 탄산나트륨, 암모니아, L-타르타르산칼륨 또는 탄산수소칼륨	탄산칼슘, 탄산칼륨, 탄산수소나트륨, 탄산나트륨, 암모니아, L-타르타르산칼륨, 탄산수소칼륨, 인산 또는 젖산

출처: 国税庁, 「酒類の保存のため物品を混和することができる酒類の品目等を定める等の件 (平成9年国税庁告示第5号)」の一部を改正する告示案等に対する意見募集について, 2023.11.30

유럽연합, 벌꿀 · 과일주스 · 과일잼류의 라벨링 기준을 업데이트하는 「아침식사 지침」 개정안 채택

- 2023년 유럽의회는 소위「아침식사 지침(breakfast directive)」으로 불리는 유럽연합 마케팅 표준의 개정안을 채택하고, 식품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벌꿀, 과일주스, 과일잼류 제품의 라벨링 기준을 일부 수정 함

주요 내용(벌꿀, 과일주스, 잼에 대한「아침식사 지침」라벨링 개정사항)

- 벌꿀 개정사항(지침 2001/110/EC)

- 벌꿀 수확 국가는 제품 표시사항(product indication)과 동일한 시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되어야 함
- 벌꿀이 두 개 이상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 비율에 따라 라벨에 내림차순으로 국가를 표시해야 함
- 벌꿀의 75% 이상이 유럽연합 외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 해당 정보가 전면 라벨에 정확히 표시되어야 함
- 벌꿀에 당 시럽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는 공급망 이력 체계를 구축해야 함

- 과일주스 및 유사제품 개정사항(지침 2001/112/EC)

- ‘천연 발생 당류만 함유(당류 미첨가)’ 문구의 라벨 표기를 허용함
- 저당 제품으로 개량된 과일주스는 ‘저당 과일주스(reduced-sugar fruit juice)’ 라벨 표기를 허용함
- 과일주스, 잼류, 젤리 및 우유에 함유된 천연 발생 당류를 제거하고, 제거된 당류의 맛과 질감, 최종 제품의 품질을 보완하기 위해 감미료를 사용해서는 안 됨
- 저당 과일주스의 라벨링에는 건강상의 이점 등 긍정적인 특성을 강조할 수 없음
- 과일주스, 잼, 젤리류 및 밤 튀레는 원산지가 제품 전면에 표기되어야 하며,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과일의 원산지는 비율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표시되어야 함

- 과일잼과 젤리, 마멀레이드와 밤 튀레(지침 2001/113/EC)

- 과일주스, 잼류, 젤리 및 우유에 함유된 천연 발생 당류를 제거하고, 제거된 당류의 맛과 질감, 최종 제품의 품질을 보완하기 위해 감미료를 사용해서는 안 됨
- 과일주스, 잼, 젤리류 및 밤 튀레는 원산지가 제품 전면에 표기되어야 하며,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과일의 원산지는 비율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표시해야 함
- 감귤류(citrus) 잼의 라벨에만 사용이 허용되었던 ‘마멀레이드’ 용어를 모든 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2023년 12월 12일 본회의 채택 완료, 회원국 정부와 협의 후 최종 법안 발표 예정



TBT

이슈 바로가기 ▶

출처: European Parliament, 'Breakfast directives': MEPs want clearer labelling of honey, fruit juice, jam, 2023.12.12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

말레이시아, 「식품 규정(개정) No.4 2020」, 2024년 1월 1일 발효



TBT

이슈 바로가기

2020년 7월 21일 말레이시아 식품안전품질부는 식품 라벨, 식품 첨가제 관련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현행 「식품 규정 1985 (P.U. (A) 437/1985)」를 개정하는 「식품 규정(개정)(No.4) 2020 (P.U. (A) 209)」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4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주요 개정 사항)

1) 식품 첨가물 라벨링

- 식품 첨가물의 기능과 유형을 표시하고, 괄호로 명칭 또는 INS(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 for Food Additives)* 번호를 표시해야 함

(* 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 for Food Additives: 국제적으로 식품 첨가물이나 원료를 구분하는 번호 시스템

- INS 번호가 없는 식품 첨가물의 기능과 유형, 명칭을 표시해야 함

- 식품 첨가물에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한 가지 기능만 표시하면 됨

- 식품 첨가물이 향료일 경우, 라벨에는 기능 표시만 필요함

2) 영양 표시 변경 사항

① 영양 성분 표시

- 영양 표시 요건이 적용되는 식품의 범위가 확대됨

- 총 설탕의 양을 라벨에 100g 당 또는 100ml 당 또는 포장당 g으로 표시해야 함

② 영양소 기준치(NRV, Nutrient Reference Values)** 변경 사항

(**) 식품 간 영양소 비교가 쉽도록 식품 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 1일 섭취 기준량

구분	영양 성분
(신규) 영양 성분 표시 필요	비타민 K, 판토텐네이트, 비오틴, 구리, 셀레늄, 망간, 몰리브덴, 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에너지
NRV (증가)	비타민 D, 비타민 C, 엽산, 비타민 B12, 칼슘, 마그네슘
NRV (감소)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B6

③ 영양 강조 표시

- 설탕 무첨가 및 나트륨 무첨가 표시 조건을 규정함

- 허용된 영양 기능 강조 표시 및 기타 기능 강조 표시는 제 5A 부칙의 표 III 및 표 IV를 준수해야 함

- 기능 강조 표시에는 영양소가 질병 치료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됨

3) 라벨 표시 금지 문구

- 특별한 식단(special dietary) 이라는 단어 또는 이와 동등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됨

- 유기농(Organic), 생물학적(biological), 생태학적(ecological), 바이오다이내믹(biodynamic)

또는 기타 유사 단어는 말레이시아 당국이 정한 조건 또는 승인 요구에 부합해야만 사용이 가능함

- 통곡물(wholegrain) 또는 통밀(wholeme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함

4)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출처 : Chemlinked, Reminder: Malaysia's Food (Amendment) (No.4) Regulation 2020 Takes Effect on Jan 1, 2024, 2023.12.05

카타르, 한국 식품 수출 시 적합성 인증서(CoC) 제출 필수 (202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20일 카타르 공중 보건부의 식품 안전 환경 보건국은 《특정 수입 식품의 예방조치 요건 및 정당성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카타르로 수입되는 일부 식품에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s of conformity, CoC) 제출 요건을 적용한다고 밝힘

주요 내용

1) 대상 품목: 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가공식품

2) 카타르 적합성 인증서의 발급 요건

- 카타르로 수출되는 식품 화물에 대한 '선적 전 검사' 절차를 통해 적합성 인증서 발급 필요

- 식품을 생산하는 원산지 국가에서 카타르로 수출되는 식품의 생산 시설 적합성 평가 진행

- 평가 기준 : 카타르 기술 규정 및 표준 요구사항 준수 여부

- 카타르 정부의 지정 업체를 통해 '수출 품목별 적합성 인증서 발급 신청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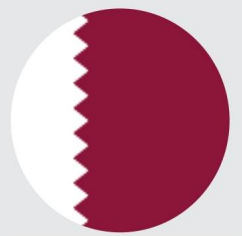
3) 적합성 인증서 신청 가능 기관 : [Intertek](#)

4) 적합성 인증서(CoC) 신청 서류

- 신청서
- 승인된 등록 인증서 또는 QFR 번호*
- 등록/무역라이선스
- 인보이스 및 패키징리스트
- 원산지 증명서
- 보건문서
- ISO 공인 시험소의 시험성적서

(* 카타르 보건부 '온라인 식품 안전 시스템(Watheq)'을 통해 등록된 식품이어야 함

5)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카타르로 수출된 식품에 적용



TBT

이슈 바로가기

출처 : MoPH, Precautionary-Requirements-Measures-for-Some-Imported-Foodstuffs-and-Their-Justifications, 2023.11.20